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56호

2021.3.9.(화)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676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676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지역개발에 대한 용자 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자금 및 해당 기금과 관계된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승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전화: 02-2133-6866, FAX: 02-2133-0825, E-mail: yeon02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